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10. 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9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10월 2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▣ 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박현옥

가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해소하고,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내용을 반영하며, 기타 인용조문 수정 및 용어정비를 통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구세 기본 조례 안 제39조제3항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
 - 상위법인 「국세징수법」 제8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
- 2) 구세 기본 조례 안 제17조제1항 공탁 규정 삭제, 예탁으로 일원화
 -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○ 본 조례안은 2015.5.18. 시행된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 내용에 따라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고, 「국세징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납 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가)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에 따라

- 1) 상위법령(지방세기본법)에 없는 “우편”이란 용어정의를 우리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,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, “공탁 수령증”을 “공탁 영수증”으로, “국채·지방채의 등록필증서”를 “ “국채·지방채, 사채의 등록 확인증”으로, “등기필증 도는 등록필증”을 “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기확인증”으로 “유보하여야 한다”를 “보류 할 수 있다”로, “유보기간”을 “보류기한”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,
- 2) 종전에는 공매 등에서 발생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,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에 따라 이를 우리 구 금고에 예탁하도록 공탁 규정을 삭제함(안 제17조)
- 3) 「국세징수법」 제82조제3항 및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최소 규정을 “징수하여야 한다”의 강제규정에서 “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”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함(안 제23조)

나) 「국세징수법」 개정에 따라

- 1) 지방세 체납 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“10일간”에서 “1개월”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음(안 제39조제3항)

다) 불명확한 조례상 문구를 상위법령(지방세기본법)에 따라

- 1)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시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,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1항)
- 2)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자를 임차인으로 한정하였음(안 제14조제1항)
- 3) 조례 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잘못 인용된 조문 내용인 세무 공무원이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서 접수 처리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를 법 제80조 및 조례 제21조로 정비(안 제22조)

라)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로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음

- 1) 상위법령(지방세기본법)에 규정되어 있는 “임대차계약”을 우리 구 조항에 추가하고, “통정”을 “서로 짜고”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음(안 제45조제2항)
- 2) 구청장은 “주무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”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”를 “주무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“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”로 조례문구를 정비하였음(안 제15조제3항)
(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허사업의 제한요구 통지를 받은 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내용임)

마) 그 밖에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임

○ 동(同) 조례안은 2015.8.27.~9.16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며, 또한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국세징수법」 등 타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새로 개정된 상위법에 적합하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였고, 그 밖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등 잘못 표현된 내용이나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는 조례문구는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개정

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